

●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2-19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나.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31조(압류)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2. 5. 13.~ 2022. 5. 26.)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주)답소*루 부*우체국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63번길 1*, 23*호	191023525외 13건	13,439,750원	후납우편료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31)8014-3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3일

경인지방우정청장